

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안내문

이용인원 제한 안내

정부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이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.

- 업체명 :
- 시설면적 : m^2
- 이용인원 : 명($8m^2$ 당 1명)

-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신고면적 $8m^2$ 당 1명)
 - ※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-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
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 - ※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-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- 방역관리자 지정
-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
-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
-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
-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- 고위험군(65세 이상 어르신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) 시설 이용 자제 권고

참고

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■ 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p>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 <p>⑧ 환기하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<p>⑨ 소독하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 1회 이상 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<p>⑩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	
추가수칙	<p>① 시설 내 공용 장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<p>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</p>	
<p>★ 추가 적용 수칙</p>	
<p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 	<p>○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